

신사업위원회 규정

(구. 생활체육위원회)

신사업위원회 규정

제정 2018. 1. 15.

개정 2019. 1. 17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(이하 “협회” 라 한다.) 정관 제 37조①항에 따라 설치·운영 되며, 생활체육을 포함한 신사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본 협회 회원단체인 시·도 및 시·군·구 협회 회원을 적용한다.
② 본 협회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인의 권익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
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1명
3. 위원9명 이상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제4조(위원의 위촉) 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야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2.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3.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제5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촉 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 서를 제출한 경우

제8조(회의의 소집 등)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.

제10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 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제척 및 기피)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.

제12조(경비의 지급) 정관 제45조 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, 급여 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.

제 3장 위원회의 기능

제13조(기능) 신사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생활체육, **베이스볼5**, 스포츠클럽, **일반부** 육성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생활체육, **베이스볼5**, 스포츠클럽, **일반부**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
3. 생활체육, **베이스볼5**, 스포츠클럽, **일반부** 대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장, 체육관(사설포함)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생활체육, **베이스볼5**, 스포츠클럽, **일반부**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각 종 국내 및 국제 야구·소프트볼·**베이스볼5**의 **신사업팀** 관련 대회 개최 및 주관·참가
7. 시도 생활체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8. 기타 생활체육, **베이스볼5**, 스포츠클럽, **일반부** 육성에 관한 사항
9.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에 대한 예외) 이 규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시작 직후 이 규정 제3조에 따른 위원회를 새로 구성 할 수 있다.